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6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박덕흠 · 주호영
김재섭 · 황명선 · 엄태영
서일준 · 박정훈 · 김상훈
조은희 · 박상웅 · 윤한홍
김위상 · 김용태 · 서범수
김태호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현행법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나, 질병관리청고시인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에 따르면 12세~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, 그마저도 18세~26세 여성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외에도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, 예방접종 시 관련 주요 질환에 대한 90%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. 또한, 남성도 함께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음.

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발의되고 있는 상황인바, 소득 구분 없이 남·녀 모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과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의2 신설 등).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 및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기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제2호 중 “제24조제1항”을 “제24조제1항, 제24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24조제2항”을 “제24조제2항, 제24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24조의2(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 및 12세 이상 19세 이하 남성에게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기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
제64조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)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가 부담한다. 1. (생략) 2.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	제64조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제24조제1항, 제24조의2제1

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	<u>항</u> ----- -----
3. <u>제24조제2항</u> 및 제25조제2항 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	3. <u>제24조제2항, 제24조의2제2항</u> ----- ----- -----
4. ~ 11. (생략)	4. ~ 11. (현행과 같음)